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예)

소관부서 : 상호금융수신지원부(T.3210)

[2012. 8. 22. 제정
2019. 5. 21. 개정
2020. 5. 25. 개정
2021. 7. 2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등) ①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금소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 감독규정”이라 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본 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28. 개정)

②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금소법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통틀어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7.28.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1.7.28. 개정)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 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금소법 제3조에서 정하는 것 중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3.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또는 금소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 또는 금소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본 조합에 서면으

로 통지하고 본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가. 투자권유희망투자자 : 투자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1) 정보제공투자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이하 “투자자정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일반투자자

2) 정보미제공투자자 : 본 조합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일반투자자

나. 투자권유불원투자자 : 투자권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반투자자

6.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되,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전 대상에 대한 운용과 결과 귀속으로서 집합투자로 보는 행위를 포함한다.

7. “집합투자업자”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각 호에 따라 정의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9.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나.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한다.

다. [사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 다만,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한다.](#)

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마.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를 포함한다\). 다만, 금소법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각 목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한다.](#)

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사.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한다\)](#)

10.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그 소속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11.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본 조합이 해당 회사의 발생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나. 본 조합과 상호간 임원 겸임을 하는 회사

다. 본 조합이 사용하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과 같은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어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회사

12. “계열회사등”이란 계열회사와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본 조합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금소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본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2021.7.28. 개정)

③ 주권상장법인이 본 조합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본 조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④ 본 조합은 전문투자자의 일반투자자 전환내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 임직원은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그 확인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추어 판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2021.7.28. 개정)

1. 확인의 취지 이해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고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투자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의 경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다. 향후 본 조항과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2021.7.28. 개정)

④ 임직원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2021.7.28. 개정)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2021.7.28. 신설)

제7조(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2021.7.28. 개정)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제1항, 별지 제2호에 따른 적합성 판단 방식 및 별지 제4호에 따른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에 따른다.(2021.7.28. 개정)

1. 서면 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팩스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21.7.28. 신설)

[2021.7.28. 제목개정]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항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에서 정한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본 조항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본 조항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은 본 조항이 정한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성향 및 별지 제4호에 따른 기준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본 조항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7.28. 개정)
- 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2021.7.28. 개정)

⑥ 임직원은 다음 제1호의 투자자에게 제2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21.7.28. 신설)

1. 교부대상자: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ELS, ELF, ELT, DLS, DLF, DLT

제11조(부당권유행위의 금지 등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7.28. 개정)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관계법령등 및 본 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등으로 받는 행위
12. 투자성 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13.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임직원이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14. 금소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계열회사등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본 조합과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하는 “유사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2.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본 조합이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할 수 있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라 함께 투자권유하는 경우 본 조합은 제5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주된 투자대상 자산·국내 또는 해외 등의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향후 전망, 운용 안정성, 판매전략 등을 감안하여 달리 투자권유할 수 있다.

[2021.7.28. 제목개정]

[2021.7.28.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본 조합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된 책임자(「전결규정」에 따른 지점장 등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자신의 소관 업무에서 발생한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의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 조합은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본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제3절 설명의무

제13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와 확인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투자 권유 임직원의 설명의무 : 담당 임직원이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사항을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법
 2. 투자자로부터의 설명내용 이해 확인의무 : 투자설명사항을 설명 받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게 하여 확인받는 방법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 서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은 제외한다.(2021.7.28. 개정)

④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특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자본시장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2021.7.28. 개정)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기존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2021.7.28. 신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7.28. 개정)

⑨ 임직원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2021.7.28. 신설)

제14조(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집합투자기구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집합투자기구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를 들어 20%, 40%, 60% 등으로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을 말한다)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2021.7.28. 신설)

제15조(목적) 이 장에서 정한 보호기준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취약할 수 있는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상품 판매 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판단 기준과 더불어 이 장에서 정한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16조(고령투자자의 정의) ① 고령투자자란 만 65세 이상의 투자자를 의미하며, 그 중 만 80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한다.

②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③ 계좌명의인이 고령이 아니면서 대리인이 고령인 경우와 계좌명의인이 고령이면서 대리인이 고령이 아닌 경우에도 고령투자자에게 적용하는 판매절차를 준용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17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18조(본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고령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본점 내 전담부서 및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19조(투자권유 유의상품) ① 펀드판매준법감시인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ELF, ELT / DLF, DLT 및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나 또는 그 밖에 가격변동성이 큰 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펀드판매준법감시인은 가격변동성의 범위 등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권유 유의상품(이하 “투자권유 유의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021.7.28. 전문개정]

제20조(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① 판매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관리직 직원(지점장 또는 감사통합책임자를 말한다)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직원은 투자권유시 배석 등을 통하여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투자자 확인서 뒷면의 관리책임자 확인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③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직원에게 투자권유를 중단하도록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본 조합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전 상담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정보의 변경 여부
2. 투자자금의 성격
3. 투자권유과정의 적법성
4.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 여부
5. 건강 및 인지능력

⑤ 관리직 직원이 자주 접촉하여 고객의 건강상태, 투자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1.7.28. 전문개정]

제21조(가족 등 조력자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조력자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령투자자의 동의 및 조력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처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22조(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2021.7.28. 전문개정]

제23조(초고령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① 초고령자에게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투자권유를 자제하고,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자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확인 방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가입의 적정성 여부를 서명,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조력자가 동석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관리책임자가 동석하여 초고령자를 조력하고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021.7.28. 전문개정]

제6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2021.7.28. 개정)

제24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본 조합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상품 중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15조에서 이동]

제7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2021.7.28. 개정)

제25조(투자권유창구 등의 표시) 본 조합은 영업점에 자금입출 등 통상적인 창구와 구분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 창구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16조에서 이동]

제26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① 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가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 조합은 본 조합의 인력현황 및 판매건수 등을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를 펀드판매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 및 임직원은 본 조합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합은 투자권유 임직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민원발생 여부 등 판매의 질적 측면을 반영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17조에서 이동]

제2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계약서, 약관 및 금융상품 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본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

다.

④ 본 조항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사실에 관하여 투자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18조에서 이동]

제2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본 조항은 금소법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한 사실(이하 통틀어“법 위반사실”이라 한다)로 인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자본시장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투자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항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조항은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투자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시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본 조항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본 조항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2021.7.28. 본조신설]

제29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편의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연계·제휴서비스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투자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축소·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소법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을 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5. 투자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6. 투자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소법 감독규정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7. 투자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8.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9.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이하“금전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 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 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라. 금융투자상품에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개인

[2021.7.28. 본조신설]

제30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19조에서 이동]

제31조(과당매매 및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①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 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20조에서 이동]

제32조(불건전영업행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서 정한 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 정한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본 조합과 인수계약 체결한 경우, 본 조합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본 조합이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본 조합 또는 본 조합과 계열회사등 관계에 있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합병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 조합 또는 본 조합과 계열회사등 관계에 있는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본 조합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⑥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본 조합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본 조합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

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⑧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21조에서 이동]

제33조(장애인에 대한 판매기준) ① 본 조항은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한하여 투자권유절차에 따른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되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조항은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며, 세부 고객응대 지침은 본 조항의 영업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1.7.28. 본조신설]

제3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본 조항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일정한 기간 이상 서면, 마이크로필름, 전산자료,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기간은 별지 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본 조항은 제2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항은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별지 제8호에서 정한 자료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항은 투자자가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열람요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열람 목적 :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2.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제1호 간의 관계
3. 열람 방법

⑥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 조합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⑦ 본 조합은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본 조합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금소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⑨ 본 조합에 제8항에 따라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 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 다. 열람 방법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 다. 이의제기 방법

3.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가. 열람이 불가능 사유
- 나. 이의제기 방법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22조에서 이동]

제8장 보칙(2021.7.28. 개정)

제35조(점검) 펀드판매준법감시인은 이 준칙의 적정성 및 임직원의 투자권유준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23조에서 이동]

제36조(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 ① 본 조합은 집합투자증권 세부 판매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는 집합투자증권 표준판매절차를 제정·운용 하여야 한다.

② 펀드판매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표준판매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21.7.28. 본조신설]

[2021.7.28. 제24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준칙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21.)

이 준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5.)

이 준칙은 20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8.)

이 준칙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항목

대분류	질문항목	
재무적 필요성	0.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연금 등이 주 수입원임
재산 상황의 파악	2. 보유 금융자산 중 투자성상품의 비중	① 투자성 상품 미보유 또는 20% 미만 ② 20% 이상 ~ 40% 미만 ③ 40% 이상 ~ 80% 미만 ④ 80% 이상
금융투 자상품 및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	3.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①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②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낮은 수준 - 금융상품 중 예·적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
	4.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객관적)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다.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된다. 농협에서 가입한 모든 펀드는 예·적금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가 된다.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치	5. 감내할 수 있는 손실감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②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음 ③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음 ④ 투자원금 보존을 추구함
	6.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년 이상 ② 2년 이상 ~ 3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⑤ 6개월 이내 ⑥ 투자기간 상관없이 특정 만기일까지 보유(ELF, DLF, 목표전환형, 단위형 펀드 등)
과거 금융 투자 상품 경험	7.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중복응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F(ELS), ELD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F(ELS), 혼합형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F(ELS), 시장 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8. 과거 가입한 상품의 해지 목적 (중복응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에 설정했던 목표수익률에 도달하여 수익실현을 목적으로 해지하였음 ② 가입한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해지하였음 ③ 학자금, 전세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단기간 내에 사용처가 확실한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이나 손실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시점에 해지하였음 ④ 투자경험 없음

<별지 제2호>(2021.7.28. 개정)

적합성 판단 방식 [Scoring 기준]

■ 문항별 배점

○ 0번 : 스코어링 없음

○ 1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3.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 2번 : 스코어링 없음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2.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 4번 : 1) ○로 응답한 경우 등급산출불가, 2) ×로 응답한 경우 -0.5점,
3) ○로 응답한 경우 -0.5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0.0점, ②로 응답한 경우 7.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5.0점,
④로 응답한 경우 2.0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5점, ②로 응답한 경우 2.0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5점
④로 응답한 경우 1.0점, ⑤로 응답한 경우 0.5점, ⑥로 응답한 경우 2.5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0점, ②로 응답한 경우 2.5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5점,
④로 응답한 경우 4.5점, ⑤로 응답한 경우 5.5점
(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8번 : ③으로 응답한 경우 -1.0점

○ 9번 : min(스코어링 산출등급, 9번 답변)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9번까지의 설문항목 및 파생상품 관련 질의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1.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9번까지 및 파생상품 관련 질의의 합이 27점인 경우, $(27점 \div 31.5점) \times 100 = 85.7점$

■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투자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43점 이하	: 안정형
· 43점 초과 ~ 55점 이하	: 안정추구형
· 55점 초과 ~ 68점 이하	: 위험중립형
· 68점 초과 ~ 81점 이하	: 적극투자형
· 81점 초과	: 공격투자형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별지 제3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매우 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위험
채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단계로 분류

<별지 제4호>

투자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투자자 성향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적합성 보고서

* 대상상품: ELS, ELF, ELT / DLS, DLF, DLT
 * 대상고객: 대상상품 가입경험 없음 고령투자자(만65세 이상)
 ※ 투자권유불원 고객, 부적합 고객은 적합성 보고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권유 상품

권유 상품	
투자 권유 사유	<p>① 수익률 우선 고려 고객이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희망하여 타 상품 대비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추천하였음</p> <p>② 안정성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수익구조의 상품을 추천하였음</p> <p>③ 특정 만기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특정 만기를 고려함에 따라 만기상환형, 조기상환형의 상품유형을 선택하고, 조기상환형의 경우 조기상환 가능성이 큰 상품을 추천하였음</p> <p>④ 기초자산 우선 고려 고객이 상품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특징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에 따라 기초자산의 변동성, 개수, 가격 수준, 기초자산 간의 상관관계 및 향후 전망 등을 종합하여 상품을 추천하였음</p> <p>⑤ 기타(직접 입력)</p>
핵심 유의사항	<p>해당 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상품구조 및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형 상품의 경우,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대 만기까지 자금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금운용 기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p> <p>기타 (직접 입력)</p>

※ 임직원은 특정상품을 권유한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함

적정성 판단 보고서

고객명:	고객번호(사업자번호):
■ 고객정보 확인결과	
고객 정보	
고객 연령	
투자기간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보유자산 등	
위험에 대한 태도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 고객정보 확인결과	
종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이 유	
■ 참고 사항	
○ 본 보고서는 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본 조합이 고객에게 알리는 경우에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적정성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월 ____일	
(00농협 00지점)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 회사 참고사항			
※(예시) ① () 개 항목 충족/미충족시 또는 ② 총점 () 점 이상/ 총점 () 점 이하 적정/부적정 해당여부는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름(아래 표 참조)			
고객 정보	적정성 판단 결과		미충족 사유
고객 연령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투자 기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해당 금투상품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기대이익 및 손실감내수준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보유자산 등 (연간 소득 및 부채 포함)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과거 상품 취득 경험 등	<input type="checkbox"/> 충족 <input type="checkbox"/> 미충족	() 점	
종 합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총점()점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귀하가 본 조합과 체결한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건에 대해 수락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 회사의 통지 결과

금융상품 명칭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본 조합의 판단 결과		<input type="checkbox"/>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위법계약 해지 거절
해지거절	정당한 사유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예 :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 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 금소법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제1호에 의해 거절할 경우 근거자료 필수 첨부

▣ 귀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본 조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농협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기간

(제34조제2항 관련)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 기간
영업에 관한 자료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 -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유문서 등을 포함) -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 제공시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③ 금융상품 및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 상근임원의 승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개설 관련서류 ⑥ 그 밖의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10년
	2. 분쟁 등 제1호외에 투자자와 관련된 자료 ① 투자자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투자자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② 투자자예탁재산 보관기록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여부 등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5년
	3.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 - 투자자별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② 투자자의 매매거래기록 -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체세공과금 등) ③ 일일정산대장 등 그 밖에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	10년

	<p>3의2. 최선집행기준의 점검 결과</p>	10년
	<p>3의3. 다자간매매체결업무와 관련된 자료</p> <p>① 호가의 입력내용 ② 매매거래내용</p>	10년
	<p>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p> <p>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자산 대여·대차 등 운용 지시서,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 관리위탁계약서, 부동산 등 매매·임대차등 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예금·보험금등에 대한 근질 및 근저당 등 담보권설정서류, 이자·공사비·등기비용·제세공과금 등 납부서류 등</p> <p>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련자료 -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기준가격 오류 수정 및 재공고에 관한 기록 등</p> <p>③ 투자일임재산 운용관련자료 - 투자일임보고서, 일임재산운용내역서</p> <p>④ 신탁재산 운용관련자료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신탁재산명세서, 신탁재산운용내역서 등</p>	10년
	<p>5.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관련 자료</p> <p>① 업무위탁 관련자료 - 업무위탁계약서(Delegation Agreement), 업무위탁 운영기준,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자격증빙서류</p> <p>②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 - 조사분석자료, 배포시기(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p>	3년
	<p>5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재된 사항 이외에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p>	10년
투자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p>5의3. 투자자 권리 행사와 관련된 자료</p> <p>① 금소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 요구 내역 등 관련된 사항</p> <p>② 금소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한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p> <p>③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p>	10년

<p>재무에 관한 자료</p>	<p>6.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p> <p>①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p> <p>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황, 변경내역</p> <p>③ 증권보유기록(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p> <p>- 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p> <p>④ 증권 매매기록(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⑤ 파생상품 거래기록(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p> <p>-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arm's length rule) 적합여부, 거래대상, 거래시기, 수량·가격, 거래사유</p>	<p>10년</p>
<p>업무에 관한 자료</p>	<p>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p>	<p>10년</p>
	<p>8.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는 거래 관련 자료</p>	<p>5년</p>
	<p>9.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p>	<p>3년</p>
	<p>10. 자산구입·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p>	<p>3년</p>
<p>내부통제에 관한 자료</p>	<p>11.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자료</p> <p>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p> <p>-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사항</p> <p>- 역대 내부통제기준</p> <p>-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p> <p>②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p> <p>-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p> <p>③ 내부감사활동에 관한 기록</p> <p>- 내부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p>	<p>5년</p>
	<p>12. 임원·대주주·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인력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p>	<p>5년</p>
<p>그 밖의 자료</p>	<p>13. 다른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p> <p>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p> <p>② 민원에 관한 사항</p> <p>-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p> <p>③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인가, 각종 지침, 비조치의견서 등</p> <p>④ 각종 계약서</p>	<p>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p>